

가로수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9인
2. 입소대상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3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요양시설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액 (30일기준)

분류	인력 배치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포함)		
		본인부담금			식사 재료비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2.3:1	516,000	309,600	206,400	234,000	750,000	543,600	440,400
	2.1:1	542,700	325,500	216,900		776,700	559,500	450,900
2등급	2.3:1	478,800	287,100	191,400		712,800	521,100	425,400
	2.1:1	503,400	301,800	201,300		737,400	535,800	435,300
3,4,5 등급	2.3:1	452,100	271,200	180,600		686,100	505,200	414,600
	2.1:1	475,200	285,000	189,900		709,200	519,000	423,900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병실료
1일 기준	2,600 X 3식	-	-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을”,“병”)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시 주의사항

- 1. 입소자가 이용하는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 2.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요양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